

3 「결핵예방법」상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에 대한 사항

※ [참고] 「결핵예방법」 제11조 관련 결핵검진등 현황 조사

1. 목적

결핵발생 시 전파 위험 등 **파급력이 큰 집단시설 종사자·교직원**에 대해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실시가 의무화** 됨(16.2.3. 개정, 8.4.시행)에 따라, **법에서 정한 검진 의무를 기관장의 책임 아래 성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함

2. 근거

- 가.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 및 제34조(과태료)
- 나.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다.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3. 주요 내용

- 가. 조사주체 : 시·도 또는 시·군·구
- 나. 조사내용 : 기관별 전년도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완료 여부 확인
 - (표준서식) ①‘**결핵검진등 실시 확인 대장(예시)**’을 활용하여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②추후 지자체에서 **현황 조사 시 대장 제출 협조**
 - * 지역별 또는 기관별 상황에 따라 예시로 제시된 대장을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자체 관리 대장을 사용할 경우 예시에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추후 확인 가능한 형태여야 함

다. 조사구분

1) 정기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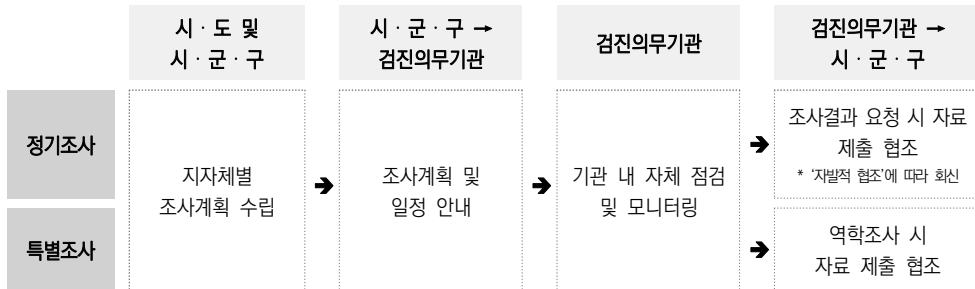
- 가) 목적 : 결핵검진등 의무에 대해 **자발적인 이행 유도**
- 나) 대상 :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의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
 -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등
- 다) 지자체 여건에 따라 연간 조사 시기와 조사 대상기관 수 및 조사방법(현장, 서면 등) 등 조정·시행

2) 특별조사

- 가) 목적 : 결핵검진등 의무 미이행에 대한 **적절한 행정조치(과태료 부과 등)** 실시
- 나) 대상 : “**정기조사**” 대상과 동일
- 다) 시기 : 결핵검진등 의무 대상 기관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하여 역학조사 시(상시)**
 - * 정기조사 실시 여부 또는 횟수와 관계없이 실시

※ [참고] 「결핵예방법」 제11조 관련 결핵검진등 현황 조사

4. 주요절차 : 「행정조사기본법」 및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자발적협조**” 하에 조사 실시



1) 지역별 지도 점검 계획 수립

가) (시·군·구) 담당자는 관내 대상기관 조사 계획 수립

나) (시·도) 시·군·구의 조사 계획을 확인 및 관리하고 모니터링

2) 관내 조사 대상기관 검진 의무 안내 및 조사계획을 사전 고지

3) 결핵검진등 의무 이행여부에 대해 지도 조사 실시

4) 필요 시(위반행위 적발 시), 해당 기관장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5. 협조 사항

1) 지자체별 관내 상황을 고려하여 지도·조사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재규정 필요

2) 기관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조사**하며,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중점을 둠



※ [참고] 「결핵예방법」 제11조 관련 결핵검진등 현황 조사

결핵검진등 실시 확인 대장(예시)

▶ **일러두기**

- 1) 이 서식은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결핵검진등 의무와 관련하여 검진의무기관이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서식입니다.
- 2) 지역별 또는 기관별 상황에 따라 대장을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자체 관리 대장이 있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제시된 내용이 포함되어 추후 확인 가능한 형태여야 함)

1. 기본정보

기관명	기관장	
기관유형 (해당 유형에 ✓표시)	<input type="checkbox"/>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input type="checkbox"/>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원 <input type="checkbox"/>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input type="checkbox"/>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input type="checkbox"/>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input type="checkbox"/>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작성일	작성 및 확인자	

2. 이행 총괄표

구분	기존종사자		신규채용자	
결핵 검진	매년 1회(매년 1.1 ~ 12.31. 내)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대상] 명	[실시] 명	[대상] 명	[실시] 명
잠복결핵감염 검진¹⁾	채용일로부터 1회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대상] 명	[실시] 명	[대상] 명	[실시] 명
매년 검진²⁾	매년 1회(매년 1.1 ~ 12.31. 내)			
	[대상] 명	[실시] 명		

- 1) 결핵 또는 잠복결핵감염 치료력이나 면역학적 검사에서 잠복결핵감염 양성판정을 받은 경우 문진과 진찰을 실시하고 증빙을 하였다면 검진 실시한 것으로 간주
- 2)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매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자

※ [참고] 「결핵예방법」 제11조 관련 결핵검진등 현황 조사

3. 세부내역

3-1. 결핵 검진 내역

부서	이름	생년월일	임신 상태	기관·학교 입사(임용)일	6개월 이상 휴직·파견 후 복직일	검진시행일		확인증빙
						흉부X선검사	가래검사	

【 항목별 작성 요령 】

- ① **부서** : 관리대장 작성일 기준, 기관 내 종사자·교직원의 근무부서 기재
- ② **임신여부** : 임신 사유로 흉부 X선 검사를 거부한 경우, '○' 표시하고 그 외는 빈칸
- ③ **기관·학교 입사(임용)일** : 아래 기관·학교에 최초로 근무하기 시작한 날(입사일) 기재, 당해 연도 입사자가 아닐 경우 확인 가능한 수준(입사년도)까지만 작성
 ※ 신규 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을 실시했는지 확인하기 위함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원**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④ **6개월 이상 휴직·파견 후 복직일** : 휴직·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 업무 복직일을 기재하고 비 해당일 경우에는 빈칸
 ※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을 실시했는지 확인하기 위함
- ⑤ **검진시행일** : 결핵 검진(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검사 - 흉부 X선 또는 가래검사)을 실시한 날 기재
- ⑥ **확인증빙** : 결핵검진 실시 여부를 확인한 증빙 서류 유형을 기재
 ※ (검진내역 증빙예시) 검진 확인서, 진료 내역(확인)서, 진료비 상세내역서 등 단, 위는 예시일 뿐이며 증빙 기준은 관할 지자체의 장이 세부사항을 정함.

【 사례별 작성 예시 】

- ① 상반기에 결핵검진을 실시하지 못한 직원이 하반기에 임신하게 되었는데, **임신 중 흉부 X선 검사를 꺼려하고 가래검사 실시가 어려운 경우**

☞ '임신상태'에 '○' 표기 후, 나머지 빈칸 처리

부서	이름	생년월일	임신상태	기관·학교 입사(임용)일	6개월 이상 휴직·파견 후 복직일	검진시행일		확인증빙
						흉부X선검사	가래검사	
서무과	홍길순	93.12.25.	○	2022.1.1.	-	-	-	-

- ② 8개월 간 휴직 후 복직한 직원이 1개월 이내 검진 실시 후, 같은 해 주기적 검진도 실시한 경우

☞ 초회 검진을 실시한 날과 주기적 검진을 실시한 날을 함께 기재

부서	이름	생년월일	임신상태	기관·학교 입사(임용)일	6개월 이상 휴직·파견 후 복직일	검진시행일		확인증빙
						흉부X선검사	가래검사	
1-3 담임	홍길순	93.12.25.	-	2022.1.1.	2025.1.1.	2025.1.16. 2025.9.30.	-	검진확인서 진료내역서

※ [참고] 「결핵예방법」 제11조 관련 결핵검진등 현황 조사

【 사례별 작성 예시 】

① (매년 검진) 검진의무기관 간 **이직 이력이 없는** 경우

- ☞ '매년대상'에 체크, '최초근무일=현근무지입사일'로 작성, '검진시행일' 및 확인한 증빙내역 작성, 주기적 검진을 실시한 날을 누적하여 기재할 수 있음

매년 대상	부서	이름	생년월일	최초 근무일	현근무지 입사일	검진시행일	확인증빙
✓	결핵균검사실	홍길동	90.12.31.	23.11.1.	23.11.1.	23.12.1. 24.5.1.	검사확인서 의사소견서

① (매년 검진) 검진의무기관 간 **이직 이력이 있는** 경우

[예시] A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할 당시 검진을 받았고, B 의료기관으로 **근무지를 변경** (B 의료기관에서 대장 작성 시)

- ☞ A 산후조리원의 '최초근무일', '검진시행일' 작성, B 의료기관 입사일을 '현근무지입사일'에 작성
- ☞ '매년대상'에 체크, 주기적 검진을 실시한 날을 누적하여 기재할 수 있음

매년 대상	부서	이름	생년월일	최초 근무일	현근무지 입사일	검진시행일	확인증빙
✓	호흡기내과	홍길동	90.12.31.	20.3.1.	23.5.1.	20.3.10. 23.8.1. 24.7.1.	검사확인서 검사결과서 의사소견서

② (소속기간 중 1회 검진) 검진의무기관 간 **이직 이력이 없는** 경우

- ☞ '최초근무일=현근무지입사일'로 작성, '검진시행일' 및 확인한 증빙내역 작성

매년 대상	부서	이름	생년월일	최초 근무일	현근무지 입사일	검진시행일	확인증빙
	새싹반	홍길동	90.12.31.	22.11.1.	22.11.1.	22.11.30.	진료확인서

③ (소속기간 중 1회 검진) 검진의무기관 간 **이직 이력이 있는** 경우

[예시] A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당시 검진을 받았고, B 학교로 **근무지를 변경**(B 학교에서 대장 작성 시)

- ☞ A 어린이집의 '최초근무일', '검진시행일' 작성, B 학교 입사일을 '현근무지입사일'에 작성

매년 대상	부서	이름	생년월일	최초 근무일	현근무지 입사일	검진시행일	확인증빙
	행정실	홍길동	90.12.31.	22.11.1.	24.1.1.	22.11.30.	검사확인서



가.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 관련

01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a
 •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학교의 장은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여야 함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02 1번 문항 검진 대상자의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감염검진의 검진 주기와 검진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검진	검진 주기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검진 방법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결핵 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년 실시할 것 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의 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함 휴직·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검사 가래(객담, 喀痰)의 결핵균 검사 결핵감염의 위험정도를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
잠복 결핵 감염 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학교 등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중 1회 실시하여야 함 다만,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산후조리업으로의 소속 변경 또는 신규 종사 시에는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다시 실시하여야 함 (반대로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다가 다른 기관으로 변경 시에는 재검사가 필요하지 않음) 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의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해야 함 ('22.7.1. 이후 채용자) * '22.7.1. 전까지 최초의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23.6.30.까지 잠복결핵감염 검진 실시「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부칙(보건복지부령 제898호, '22.7.1.) 다만,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 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매년 실시하여야 함 * 결핵환자의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하는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7호('20.1.1.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역학적 검사 다만, 결핵 또는 잠복결핵감염의 치료 이력이나 면역학적 검사에서 잠복 결핵감염 양성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문진과 진찰로 대체 할 수 있음



03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신규채용 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기존에는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종사 기간 중 1회(매년 검진 대상의 경우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폭넓게 규정되어 있어 검진 실시·관리에 있어 혼란이 발생하거나 검진 목적(결핵 발생의 사전 예방)에 따라 검진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함
- 따라서 신규채용자의 잠복결핵감염검진을 결핵검진과 함께 조기(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하여 적절한 결핵 예방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

04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에 따라 잠복결핵감염 검진의 경우 '다른 기관·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 동 규정은 검진 의무 소속된 기관·학교 등이 변경되더라도 근무의 연속성을 인정하여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재직 중 1회만 받도록 하기 위한 취지임
 - 즉 소속기관·학교 등을 변경 시 마다 다시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며, 동 기관·학교 간의 이동(A의료기관에서 B의료기관으로 소속을 변경) 뿐만 아니라 타 기관·학교 간의 이동(A의료기관에서 B아동복지시설로 소속을 변경)에도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1회만 실시하면 됨
 - * 검진의무가 발생하는 기관·학교와의 이동을 인정함. 단,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산후조리업으로의 소속 변경 또는 신규 종사 시에는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다시 실시하여야 함 (반대로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다가 다른 기관으로 변경 시에는 재검사가 필요하지 않음)
- 다만, 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의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해야 하고, 휴직·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함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05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에 따른 검진 의무대상자가 과거 치료력 (결핵·잠복결핵감염)이 있거나 과거 잠복결핵감염검진 시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에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다시 실시해야 하나요?

- 과거 결핵 또는 잠복결핵감염 치료력이 있거나 과거 잠복결핵감염검진 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면역학적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으며 문진과 진찰로 같음할 수 있음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제2호). 다만, 이때에는 문진과 진찰에 대한 증빙이 있어야 하며 지자체의 장이 증빙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함.
- (참고) 「결핵 진료지침(5판, 2024)」: 잠복결핵감염 검사(TST, IGRAs)는 과거에 이미 양성반응을 보였거나 과거 결핵 치료력이 분명한 환자에서 시행하지 않는다. 현재 검사방법으로는 과거에 잠복결핵감염 치료 혹은 활동성 결핵에 대한 치료를 시행한 경우 새로이 감염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06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 잠복결핵감염의 치료는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 등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목록은 “결핵ZERO 누리집 > 의료기관 검색 >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 혹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07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제1항에 해당하는 종사자·교직원이 비전염성 결핵환자이거나 잠복결핵감염검진 결과 양성인 이유로 기관·학교의 장이 불이익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결핵예방법 제32조에 따라, 비전염성결핵환자이거나 잠복결핵감염검진 결과 양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주 또는 고용주가 취업거부, 복직을 허용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음
-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해서는 업무 종사 일시 제한, 취업 거부 등 사회격리 규제가 불필요하므로 (「결핵예방법」 제13조), 이로 인하여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08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에 따라 검진 의무 기관·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기관·학교의 장 등에 의해 직접 고용되지 않고 파견·용역 업체 등을 통해 간접 고용된 경우에도 종사자·교직원 범위에 포함되나요?

- a •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종사자·교직원의 정의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종사자·교직원에 대한 통상적인 의미로 해석하여 검진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고용의 형태(직접, 간접고용)와 무관하게 해당 기관·학교 등의 장의 지휘·감독하에 해당 기관·학교 등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종사자·교직원으로 볼 수 있음
 - 외부기관 파견 강사 등 기관·학교의 장 등이 직접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관·학교의 장 등의 지휘 감독 하에 있다면, 기관·학교 등에서 종사하는 종사자·교직원에 해당되어 해당 기관·학교 장 등이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해야 함
 - 하지만 사회복지요원, 자원봉사자, 개인이 고용한 간병인 등과 같이 기관·학교 등과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결핵예방법」 상 종사자·교직원으로 보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기관·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이 아니더라도 기관·학교 장 등이 결핵 감염 위험성 등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를 권장하고 있음
- * 이 때, 사회복지요원의 잠복결핵감염 검진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판정검사 시 실시한 잠복결핵감염 검진으로 갈음하여 관리할 수 있음

09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에 따른 결핵검진,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한 후 보고사항이 따로 있나요?

- a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서는 기관·학교 장은 종사자·교직원의 결핵검진 등 사항이 포함된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작성·비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 때,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시된 바가 없으므로 기관·학교 에서 자체적으로 작성·비치하시기 바람
- 이 외 검진 실시 이후에 검진 보고 의무 규정은 현재 없음. 다만,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제34조에 따라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10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감염검진은 각각 다른 검사인가요?

-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감염검진은 목적과 검사방법이 상이한 다른 검사로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명시된 기관·학교의 종사자·교직원이라면 두 가지 검사를 각각 실시해야 함

구분	결핵검진	잠복결핵감염검진
검사목적	활동성 결핵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	결핵균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검사방법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검사, 객담(喀痰)의 결핵균 검사	면역학적 검사 *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IGRA검사), 투베르쿨린피부반응검사(TST검사)

11 결핵과 잠복결핵감염의 정의, 진단방법, 치료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 대표적인 자료 : ‘결핵은 무슨 병인가요’ 소책자, ‘잠복결핵감염 A to Z’ 소책자 등
* 다운로드 위치 : 결핵ZERO 누리집 > 교육/홍보자료 > 홍보자료



나. 「결핵예방법」 제34조(과태료) 관련

01 「결핵예방법」 제34조(과태료)의 과태료 부과 주체는 누구인가요?

- 과태료 부과 주체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토록하고 있음(「결핵예방법」 제34조제2항)
 - 따라서, 학교의 경우라도 교육청이 아닌 특별자치시장 등이 부과해야 함

02 「결핵예방법」 제34조(과태료)에서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즉 과태료 부과 대상은 누구인가요?

- 과태료 부과 대상은 종사자·교직원에 대한 검진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 각호에 나열된 기관·학교*의 장 등을 말함
 -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03 과태료 부과는 기관 단위로 부과하는 것인가요?

-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의무자의 특정 시점에서 의무자가 의무를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므로 기관·학교 등의 단위로 부과함

04 검진대상자가 매년 실시해야하는 검진(결핵검진,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미실시한 횟수에 따라 과태료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 결핵환자를 검진·치료·진단하는 의료인·의료기사·간호조무사

- 과태료 부과 주체의 위반 회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임(「결핵예방법 시행령」 별표)
- 예를 들어, 금년 2월 종사자·교직원 5명에 대해 결핵검진등 미실시 사례를 적발하여 1차 위반에 해당하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면, 내년 2월에도 5건을 적발하였다면 2차 위반에 해당하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 * 전체 종사자·교직원 100명중 미수검자가 1명 혹은 100명이어도 위반회차 1회에 해당됨

05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에 해당하는 기관·학교의 장 등이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도록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사자·교직원이 검진을 거부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과태료 부과) 또한 기관·학교의 장에게 있나요?

- 기관·학교의 장 등이 그 종사자·교직원에 대한 결핵검진등의 관리 의무를 충실히 이행 하였으나 종사자·교직원이 검진을 미실시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 다만, 아래의 경우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사유는 될 수 있음(「결핵예방법 시행령」 별표)
 - ①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②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④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06 과태료 부과에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결핵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은 '19.6.12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의료기관 등의 결핵검진등 의무는 언제부터 발생하는 건가요?

- 기관·학교의 장 등에게 부과된 결핵검진등의 의무는 '16.2.3 공포되고 '16.8.4부터 시행되어 적용 중인 규정임.(「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
- 또한, 「결핵예방법」의 과태료 규정(제34조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은 '16.8.4일부터 시행되고 있었으며, '19.6.12 부터 시행되는 조항은 과태료 부과권자 및 세부 기준을 정한 것임
- 따라서, 의료기관 등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핵검진 등의 의무와 이에 따른 과태료 규정은 '16.8.4일부터 적용되고 있음

07 검진 미실시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기관·학교의 장 등은 추가적인 불이익이 있나요?

- 「결핵예방법」 상에는 추가적인 불이익은 없으나 다만, 의료기관평가인증, 어린이집평가 인증 기준 등과 같은 개별적인 기준에 관련 규정이 있다면 추가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다. 그 외

Q 01 결핵검진을 매년 실시하라고 하는데 매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통상 매년이라고 하면 1월부터 12월까지를 의미함
- 다만, 결핵검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진을 받은 시점에서 매년(1년 기준) 정기적으로 검진받기를 권장

Q 02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에 따라 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자가 임신부인 경우에도 결핵검진을 흉부X선 검사로 실시해야 하나요?

- 결핵검진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제2항 제1호‘가’~‘다’목 (가. 임상적, 방사선학 또는 조직학적 검사, 나. 가래의 결핵균검사, 다. 결핵감염의 위험정도를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 중 어느 한 기준을 충족하여도 인정됨
- 임신부의 경우 흉부X선 검사는 적절한 납 차폐물 등을 이용하면 의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흉부X선 검사 이외의 방법을 희망할 경우 가래(객담) 검사를 고려할 수 있음
- 적절한 가래(객담)검사(검체의 적합성 등)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결핵검진을 위하여 흉부X선 검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임신부가 흉부X선 검사를 거부할 경우 현재 법령 적용의 기한 범위(1~12월) 내에서 출산 후에 결핵검진 실시 후 증빙하도록 함

Q 03 국가사업으로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한 기관·학교의 장 등이 소속 종사자·교직원에 대한 잠복결핵감염검진 관리를 위하여 종사자·교직원의 동의를 받아 일괄적으로 보건소 등을 통해 잠복결핵감염검진 수검 여부를 조회 또는 회신 받을 수 있나요?

- 「의료법」에 따른 정보 누설금지, 기록 열람 조건 등이 선결되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등의 제3자 제공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 소지가 없도록 처리되어야 함